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법 개정(법률 제17472호, 2021. 3. 5. 시행)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 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한 조사에서 “도착하는 즉시”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24시간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안정적 검역체계 운영 및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검역량이 많은 국립인천검역소 소속의 평택지소를 국립평택검역소로 상향 조정하고 국립군산검역소 소속인 대산지소를 국립평택검역소 소속으로 변경하며 검역량이 적은 국립통영검역소를 국립마산검역소 소속의 통영지소로 변경하고 공항검역소 명칭에 “공항”을 추가하는 한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평택검역소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군산검역소를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으로 변경하고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울산검역소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로 변경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의 5급, 6급 이하의 복수직렬에 간호직렬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1과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3 다음에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3”를 삭제하며,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5 다음에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5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

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55 다음에 “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9”를 신설하며, “행정
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55”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 보건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9”를 삭제한다.

별표 6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3 다음에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
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3”를
삭제하며,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5 다음에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
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
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5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
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55 다음에 “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9”를 신설하며, “행정
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55”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 보건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9”를 삭제한다.

별표 7을 별표 7의1로 하고, 총계를 “207”으로 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1”를 삭제하고, 사서사무관 1 다음에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9”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9 다음에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8”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8 다음에 “행정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 사서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9”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8”를 삭제하며, “행정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2”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613”을 “66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계 및 일반직 계 “606”을 각각 “65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 다음에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9”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9”를 삭제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89”를 “99”로 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140”을 “153”으로 하며,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193”을 “21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52”를 “62”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53명 (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정원 중, 별표 6의 9급 2명은 2022년 12월 27일, 별표 7의2의 9급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질병대응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2조제7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관 할 검 역 소 (지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국립평택검역소 국립군산검역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목포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국립제주검역소
경북권질병대응센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국립포항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국립부산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김해공항검역소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제23조제5항 관련)

명칭	검역항	검역구역	
		수역	육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천국제공항		북위 37도27분, 동경 126도26분의 지점(공항표준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김포국제공항		북위 37도33분, 동경 126도48분의 지점(관제탑)으로부터 190도 진북방향 402미터 지점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남북출입사무소		북위 37도55분, 동경 126도42분의 지점으로부터 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부산검역소	부산항	북위 35도04분48.3초, 동경 129도01분39.5초의 지점(부민동 남단)으로부터 북위 35도04분53초, 동경 129도02분23초의 지점(절영도 태봉포)을 연결한 선 및 북위 35도05분25초, 동경 129도04분18.5초의 지점(광성목)으로부터 북위 35도05분46초, 동경 129도05분47초의 지점(신선대 컨테이너 부두 끝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감천항	북위 35도02분42초, 동경 129도00분01초의 지점(감천항 서방과제)으로부터 북위 35도02분57초, 동경 129도00분54초의 지점(감천항 동방과제)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다대포항	북위 35도02분45초, 동경 128도59분06초의 지점(다대포항 서방과제)으로부터 북위 35도03분25초, 동경 128도59분12초의 지점(다대포부두의 동쪽 끝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수영만	북위 35도09분27초, 동경 129도08분23초의 지점(수영만 요트계류장의 북쪽)으로부터 북위 35도09분15초, 동경 129도08분32초의 지점(수영만 요트계류장의 남쪽)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부산신항	북위 35도04분39.4초, 동경 128도49분56.7초의 지점(신항1부두 동쪽 끝)으로부터 북위35도04분16.7초, 동경 128도49분56.6초의 지점(신항4부두 동쪽 끝)과 북위 35도04분39.0초, 동경 128도47분04.8초의 지점(신항3부두 서쪽 끝)으로부터 북위 35도03분53.3초, 동경 128도47분37.4초의 지점(가덕도 서쪽 끝 매립지까지)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에서 북컨테이너부두지역 700미터, 남컨테이너부두지역 560미터, 다목적부두지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인천검역소	인천항	북위 37도29분45.2초, 동경 126도36분16.4초의 지점으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로부터 북위 37도26분19.9초, 동경 126도36분42.6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이내의 육지지역
	경인항	북위 37도33분41.3초, 동경 126도35도40.3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7도33분26.9초, 동경 126도36분13.1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평택검역소	평택·당진항	북위 37도01분02초, 동경 126도47분10.78초의 지점으로부터 반경 2천미터 원호내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대산항	북위 36도59분, 동경 126도20분의 지점(황금도)으로부터 북위 36도59분59초, 동경 126도26분18초의 지점(화곡리)과 북위 37도03분59초, 동경 126도24분48초(철도) 및 북위 37도, 동경 126도19분12초의 지점(가인서)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태안항	북위 36도52분48초·동경 126도11분06초의 지점(정곡두 해안선)으로부터 북위 36도54분30초·동경 126도15분24초 지점(민어도)과 북위 36도55분30초·동경 126도15분12초 및 북위 36도54분06초·동경 126도10분06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청주국제공		북위 36도43분, 동경 127도

	항		30분의 지점으로부터 청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군 산 검역소	군산항 장항항	북위 35도59분04초, 동경 126도44분41초의 지점(구포 34미터산정)으로부터 북위 35도59분50초, 동경 126도43분45초의 지점(고치곶) 및 북위 36도00분17초, 동경 126도40분08초의 지점(전망산정)으로부터 북위 35도58분25초, 동경 126도31분33초의 지점(7부두 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군산시 및 장항읍의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보령항	북위 36도25분21초, 동경 126도59분57초의 지점(소해)으로부터 북위 36도22분56초, 동경 126도29분12초의 지점(송도산정) 및 북위 36도24분06초, 동경 126도28분14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울 산 검역소	울산항	북위 35도28분22초, 동경 129도25분08초의 지점, 북위 35도25분35초, 동경 129도28분의 지점, 북위 35도24분, 동경 129도28분의 지점, 북위 35도24분, 동경 129도21분24초의 지점을 연	북위 35도25분45초, 동경 129도22분16초의 지점에서 북위 35도28분22초, 동경 129도25분08초 지점까지 연결한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과 내미포 최동단 북위 35도31

		결한 선안의 해면과 가남말 최동단 북위 35도30분48초, 동경129도26분55초의 지점 을 중심으로 한 반경 2천미 터 원호안의 해면	분53초, 동경 129도27분20 초 지점과 일산리 최동단 북위 35도29분55초, 동경 129도26분38초의 지점을 연 결한 선안의 해안선으로부 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국 립 포 항 검 역소	포항항	북위 36도06분48초, 동경 129도25분37초의 지점(달만 갑)으로부터 북위 35도59분 50초, 동경 129도27분31초 의 지점(일월동북방)을 연 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대 구 국 제 공 항		북위 35도53분38초, 동경 128도39분32초에 위치한 대 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 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 내의 육지지역
국 립 동 해 검 역소	동 해 · 목 호 항	동해시 냉천동단에서 북위 37도31분, 동경 129도10분 30초와 북위 37도28분44초, 동경 129도10분30초 및 동 해항 남쪽호안 끝단을 순차 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33분12초, 동경 129도 07분25초로부터 진방위 90 도로 1천350미터 지점과 북 위 37도32분, 동경 129도07 분02초로부터 진방위 90도 로 1천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호산항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12 분41.87초, 동경 129도20분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12분 41.87초, 동경 129도22분36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9도 21분52.2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42초, 동경 129도23분 55.2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이내의 육지지역
	삼척항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에서 북위 37도25분 40초, 동경 129도12분15초의 지점, 북위 37도26분05초, 동경 129도12분15초의 지점 및 북방파제 북쪽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옥계항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천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37도38분, 동경 129도05분30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37도36분48초, 동경 129도05분30초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속초항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북위 38도12분38초, 동경 128도36분09초)에서 조도 동단을 거쳐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조도 남단에서 북위 38도11분25초5, 동경 128도36분15초5를 연결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한 선안의 해면	
	양 양 국 제 공 항		북위38도03분, 동경 128도 40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 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동 해 선 도 로 남 북 출 입 사 무소		북위 38도33분58초, 동경 128도23분35초에 위치한 동 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동 해 선 철 도 남 북 출 입 사 무소		북위 38도33분55초, 동경 128도23분28초에 위치한 동 해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국 립 목 포 검 역소	목포항	북위 34도41분19.9초, 동경 126도22분34.1초의 지점(금 호선착장)으로부터 북위 34 도48분11.7초, 동경 126도26 분23.1초의 지점(부흥산정) 과 북위 34도49분48.5초, 동 경 126도22분55.8초의 지점 (삽진선착장) 및 북위 34도 45분43.7초, 동경 126도17분 55.2초의 지점(목포구등대) 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완도항	신지도 상산산정과 동망봉 산정을 연결한 선 및 신지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도 장항곶 서산에서 가미구 미 동측돌단을 연결한 선안 의 해면	이내의 육지지역
	무안국제공 항		북위 34도59분, 동경 126도 22분에 위치한 무안국제공 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국립여수검 역소	여수항	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43 분38초, 동경 127도44분의 지점으로부터 우두리 조선 봉과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북동 30도 방향으로 1천 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산정을 순차적으로 연 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광양항	북위 34도50분02초, 동경 127도46분32초의 지점으 로부터 북위 34도55분49초, 동경 127도48분45초의 지 점, 북위 34도55분49초, 동 경 127도40분의 지점 및 가 마봉(소라면 대포리 뒷산) 산정까지의 지점을 순차적 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하동항 (하동화력발 전소부두)	북위 34도56분27초, 동경 127도49분48초의 지점을 중 심으로 하는 1천미터의 반 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마산검 역소	마산항	북위 35도09분선 이내의 마 산만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및 마산수 출자유지역 내의 육지지역

진해항	진해시 행암동 동단 북위 35도06분39초, 동경 128도41분39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1천500미터 원호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통영항	북위 34도49분47초, 동경 128도24분27초의 지점(당동 남쪽 튀어나온 곳)으로부터 북위 34도49분43초, 동경 128도24분27초의 지점(당산리 돌단)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0분31초, 동경 128도27분01초의 지점(매일봉)과 북위 34도49분23초, 동경 128도26분37초의 지점(진송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삼천포항	북위 34도54분55초, 동경 128도05분21초의 지점(장사발 남단)으로부터 북위 34도54분21초, 동경 128도05분0.25초의 지점(추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4분28초, 동경 128도04분40초의 지점(신수도 북단 금주갑)을 연결한 선과 동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54분17.5초, 동경 128도03분56초의 지점(장구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5분32초, 동경 128도03분27초의 지점(사천시 대방동 남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옥포항	북위 34도53분18초, 동경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128도44분06초 지점 말단으로부터 북위 34도53분57초, 동경 128도43분07초의 말단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장승포항	북위 34도51분37초, 동경 128도44분16초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34도50분58초, 동경 128도43분59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고현항	북위 34도54분39초, 동경 128도35분08초의 지점(다갈암)으로부터 북위 34도55분18초, 동경 128도36분25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김해공해검역소	김해국제공항		북위 35도11분, 동경 128도56분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립제주검역소	제주항	북위 33도31분08.04초, 동경 126도30분05.01초의 지점(제주항 어항구 서방파제 등대)으로부터 북위 33도31분16.0초, 동경 126도31분49.9초의 지점(제주항 어항구 동방파제 등대), 북위 33도31분58.63초, 동경 126도32분28.26초의 지점(제주항 제1서방파제 등대), 북위 33도31분45.8초, 동경 126도32분29.7초의 지점(제주항 제1동방파제 등대), 북위 33도31분58.5초, 동경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126도33분29.04초의 지점 (제주항 제2서방파제 등대) 과 화북1동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서귀포항	북위 33도13분54.68초, 동경 126도33분55.63초의 지점 (서방파제 끝)과 북위 33도 13분46.84초, 동경 126도34 분09.80초의 지점(동방파제 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제 주 민 군 북 합 형 관 광 미 항	북위 33도13분33초, 동경 126도29분26초의 지점(동방 파제 등대)과 북위 33도13 분20초, 동경 126도29분42 초(남방파제 등대)의 지점 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 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제 주 국 제 공 항		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 29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 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검역구역(제24조제1항 관련)

소 속	명 칭	위 치	검 역 항	검 역 구 역	
				수 역	육 역
국 립 인 천 공 항 검역소	국 립 인 천 공 항 검 역 소 김 포 공 항지소	서 울 특 별시	김 포 국 제공항		북위 37도33분, 동경 126도48분의 지점 (관제탑)으로부터 190도 진북방향 402미터 지점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남 북 출 입 사 무 소		북위 37도55분, 동경 126도42분의 지점으로부터 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부 산 검역소	국 립 부 산 검 역 소 신항 지소	부 산 광 역시	부 산 신 항	북위 35도04분39.4초, 동경 128도49분56.7초의 지점(신항1부두 동쪽 끝)으로부터 북위35도04분16.7초, 동경 128도49분56.6초의 지점(신항4부두 동쪽 끝)과 북위 35도04분39.0초, 동경 128도47분04.8초의 지점(신항3부두 서쪽 끝)으로부터 북위 35도03분53.3초, 동경 128도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에서 북컨테이너부두지역 700미터, 남컨테이너부두지역 560미터, 다목적부두지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47분37.4초의 지점 (가덕도 서쪽 끝 매 립지까지)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국 립 평 택 검역소	국 립 평 택 검 역 소 대산 지소	충 청 남 도 서산 시	대산항	북위 36도59분, 동경 126도20분의 지점 (황금도)으로부터 북 위 36도59분59초, 동 경 126도26분18초의 지점(화곡리)과 북위 37도03분59초, 동경 126도24분48초(철도) 및 북위 37도, 동경 126도19분12초의 지 점(가인서)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 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태안항	북위 36도52분48초 · 동경 126도11분06초 의 지점(정곡두 해 안선)으로부터 북위 36도54분30초 · 동경 126도15분24초 지점 (민어도)과 북위 36 도55분30초 · 동경 126도15분12초 및 북위 36도54분06초 · 동경 126도10분06 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 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국 립 포 항 검 역 소	국 립 포 항 검 역 소 대구 공 항 지 소	대 구 광 역시	대 구 국 제공항		북위 35도53분38초, 동경 128도39분32초 에 위치한 대구국제 공항을 형성하는 구 역에서 그 주변 200 미터 이내의 육지지

					역
국 립 동 해 검 역 소	국 립 동 해 검 역 소 속초 지소	강 원 도 속초시	속초항	속초시 동북방 삼각 점(△) 36지점(북위 38도12분38초, 동경 128도36분09초)에서 조도 동단을 거쳐 연결한 선안의 해면 과 조도 남단에서 북위 38도11분25초5, 동경 128도36분15초 5를 연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 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양 양 국 제공항		북위38도03분, 동경 128도40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형 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국 립 동 해 검 역 소 고성 지소	강 원 도 고성군	동 해 선 도 로 남 북 출 입 사무소		북위 38도33분58초, 동경 128도23분35초 에 위치한 동해선도 로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 터 이내의 육지지역
			동 해 선 철 도 남 북 출 입 사무소		북위 38도33분55초, 동경 128도23분28초 에 위치한 동해선철 도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200미 터 이내의 육지지역
국 립 목 포 검 역	국 립 목 포 검 역	전 라 남 도 무안	무 안 국 제공항		북위 34도59분, 동경 126도22분에 위치한

소	소 무안 공 항 지 소	군			무안국제공항을 형 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국 립 여 수 검 역 소	국 립 여 수 검 역 소 광양 지소	전 라 남 도 광양 시	광양항	북위 34도50분02초, 동경 127도46분32초 의 지점으로부터 북 위 34도55분49초, 동 경 127도48분45초의 지점, 북위 34도55분 49초, 동경 127도40 분의 지점 및 가마 봉(소라면 대포리 뒷산)산정까지의 지 점을 순차적으로 연 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 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경 상 남 도 하동 군	하동항 (하동 화 력 발 전 소부두)	북위 34도56분27초, 동경 127도49분48초 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1천미터의 반 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 하는 해안선으로부 터 폭 5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국 립 마 산 검 역 소	국 립 마 산 검 역 소 통영 지소	경 상 남 도 통영 시	통영항	북위 34도49분47초, 동경 128도24분27초 의 지점(당동남쪽 튀 어나온 곳)으로부터 북위 34도49분43초, 동경 128도24분27초 의 지점(당산리 돌단) 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0분31초, 동경 1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 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28도27분01초의 지점 (매일봉)과 북위 34도 49분23초, 동경 128도 26분37초의 지점(진송 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경 상 남 도 사천 시	삼천포 항	북위 34도54분55초, 동경 128도05분21초 의 지점(장사발 남단) 으로부터 북위 34도54 분21초, 동경 128도05 분0.25초의 지점(추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 도54분28초, 동경 128 도04분40초의 지점(신 수도 북단 금주갑)을 연결한 선과 동 지점 으로부터 북위 34도54 분17.5초, 동경 128도0 3분56초의 지점(장구 도 북단)을 거쳐 북위 34도55분32초, 동경 1 28도03분27초의 지점 (사천시 대방동 남단) 을 연결한 선 안의 해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 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4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국립마 산검역 소 거제 지소	경상남 도 거제 시	옥포항	면 북위 34도53분18초, 동경 128도44분06초 지점 말단으로부터 북위 34도53분57초, 동경 128도43분07초 의 말단지점을 연결 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 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장승포 항	북위 34도51분37초, 동경 128도44분16초 의 지점으로부터 북 위 34도50분58초, 동 경 128도43분59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 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 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고현항	북위 34도54분39초, 동경 128도35분08초 의 지점(다갈암)으로 부터 북위 34도55분 18초, 동경 128도36 분25초의 지점을 연 결한 선안의 해면	좌란의 수역을 형성 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국립제 주검역 소	국립제 주검역 소 제주 공항지 소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제주국제 공항		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29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형 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 의 육지지역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 설>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209
일반직 계	20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원	8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 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원	11
사서사무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 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9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 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8
행정서기·사서서기·보건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 업서기·시설서기	2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	1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	2
보건연구원	70
보건연구사	8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u>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1과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u> <u>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u> <u>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u> <u>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u> <u>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u>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u> <u>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u> <u>약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u> <u>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u> <u>관 또는 보건연구관</u> • •	• • <u><신 설></u> <u>53</u> • •	• • <u>53</u> <u><삭 제></u> • •	+53 -53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u> <u>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u> <u>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u> <u>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u>	<u><신 설></u>	<u>55</u>	+55
<u>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u> <u>·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u> <u>기 또는 시설서기</u>	<u><신 설></u>	<u>29</u>	+29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u> <u>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전산</u> <u>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u> <u>보 · 시설주사보</u>	<u>55</u>	<u><삭 제></u>	-55
<u>행정서기 · 보건서기 · 전산서기</u> <u>·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u> <u>시설서기</u>	<u>29</u>	<u><삭 제></u>	-29
·	·	·	
·	·	·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u>	· · <신 설>	· · 53	+53
<u>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u>	53	<삭 제>	-53
· ·	· ·	· ·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u>	<신 설>	55	+55

<u>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u> <u>·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업서</u> <u>기 또는 시설서기</u>	<u><신 설></u>	<u>29</u>	+29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u> <u>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전산</u> <u>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u> <u>보 · 시설주사보</u>	<u>55</u>	<u><삭 제></u>	-55
<u>행정서기 · 보건서기 · 전산서기</u> <u>· 통계서기 · 공업서기 또는</u> <u>시설서기</u>	<u>29</u>	<u><삭 제></u>	-29
·	·	·	
·	·	·	

[별표 7의1] <중전의 별표7에서 이동>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 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 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u>	· · <신 설>	· · <u>11</u>	+11
<u>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 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전산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또는 보건연구관</u>	<u>11</u>	<삭 제>	-11
·	·	·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u>	<신 설>	<u>9</u>	+9

<u>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 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 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u>	<u><신 설></u>	<u>8</u>	+8
<u>행정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 기 · 시설서기</u>	<u><신 설></u>	<u>2</u>	+2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보건주사 · 약무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 사 ·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u>	<u>9</u>	<u><삭 제></u>	-9
<u>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 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 보 · 시설주사보</u>	<u>8</u>	<u><삭 제></u>	-8
<u>행정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 기</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또는 보건연구관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 사 ·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 · <신 설> 29 · · ·	· · 29 <삭 제> 99	+29 -29 +10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 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 보	<u>140</u>	<u>153</u>	+13
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보건 서기 · 의료기술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 기	<u>193</u>	<u>213</u>	+20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u>52</u>	<u>62</u>	+10
·	·	·	
·	·	·	